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2. 3. 17.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22년 3월 8일
- 회부일자: 2022년 3월 10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 「지방재정법」 제 14조가 삭제되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

4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: 「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→ 「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- 설치 근거 변경(안 제1조):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 → 「지방자치단체 기금
관리기본법」 제16조
- 기금 명칭 변경: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→ 충청북도
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
- 기금운용: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
계정으로 구분함(안 제2조제2항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인 상위법의 개정과 그에 따른 기금 명칭 변경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통합계정, 재정안정화 계정 구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- 지난 2019년 제정된 「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.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19. 연도말	2020. 연도말	2021. 연도말
충북교육청	153,000	193,943	260,576

- 조성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세수 변동 등에 따른 재정 불균형 해소 역할을 하고 교육재정운용의 탄력성 확보는 물론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이·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있음.
- 또한, 4차 산업,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,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미래 교육을 대비하고 계속비 사업의 연도별 변동성을 해소하며 코로나19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등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함.
- 다만, 2021년말 기준 2천6백억 원에 달하는 안정화 기금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.
- 본 조례 개정안의 다른 부분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